

자동차사고 피해가족 경제적 지원 대상 및 공통서류 안내

1. 중증후유장애자 :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후유장애가 「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」에 1급 내지 4급에 해당되는 자
 2. 유자녀(幼子女) :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자의 0세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
(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)

지원 요건

* 생계를 갈아하는 직계존속 :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지를 갈아하고 있는 2촌 이내의 직계 혈족

자동차사고 피해가족 경제적 지원 애로

의무사(서권나령사)의 배우자(혹은 사내)가 없거나, 무양의무사(서권나령사)에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

100

- 시군진정 등용서류
 - 지원신청서 1부(공단 소정서식)
 - 주민등록등본 1부
 - 지동지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증종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- 교통사고 증명서류
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치성위계증명서류

• 자동차사 · 자동차사

- 지원금액** : 월 20만원(매월 말 지급)
신청서류 : 지원신청 공통 서류

+ קבוצת גיבורים

 생활자료 무이자 대출

- | | | |
|------|---|--|
| 대출대상 |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입은 자의 0세부터 만 18세(미만)(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)의 자녀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| |
| 대출금액 | 월 20만원(매월 말 지급) | |
| 대출조건 | | |
| 대출기간 | 최초 대출일로부터 만 18세가 되는 날까지
(고등학교 재학방의 경우에는 졸업 또는 만 20세가 되는 날까지)
※ 예 2년마다 생활형편 심사 후 연장 | |
| 신청기간 | 지녀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상환 시작
※ 대출기간 5년 미만일 경우 15년, 대출기간 5년 이상일 경우 20년 상환, 회망시 일시상환 가능 | |
| 신청서류 | - 지원신청 공통 서류
-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(앞, 뒤) 서본 1부 | |

교통안전공단 분사 및 지역분부(지사) 현황

- 대출대상 :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자
- 지원대상 :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자

- | |
|--|
| <p>대출금액 : 월 20만원(매월 말 지급)</p> |
| <p>대출조건</p> |
| <p>대출기간</p> |
| <p>최초 대출일로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
(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)
※ 만 25년마다 생활형편 심사 후 연장</p> |
| <p>상환기간</p> |
| <p>지녀가 만 30세가 되는 달부터 상환 시작
※ 대출기간 5년 미만일 경우 15년, 대출기간 5년 이상일 경우 20년 상환, 회당시 일시상환 가능</p> |
| <p>신청서류</p> |
| <p>- 지원신청 공통 서류
- 법정대인 및 보증인 신분증(앞, 뒤) 사본 1부</p> |

지역본부(지사) | 전화 | 팩스
서울지역본부 (03)300-5177 (03)300-3

- 전화: 054-459-7301~7309
팩스: 02)309-3111
(02)309-2012
(031)298-5006
(031)298-5025
경인 지역본부

• **지원신청기간**: 연중 수시(토·공휴일 제외)

- 전용장소·시민문화복지 공간 또는 주민참여 기관이나,
도적일을 접수일로 함

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(www.ts212020.kr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- 자동차나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1544-0049